

의안번호	2207444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5. 4. 8.
추계번호	25B0186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교통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함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3.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4. 제28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5.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6.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7. 국가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8. 국가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사고조사 관련 연구·교육기관의 지정 1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 에서 정한 사항 12. 그 밖에 교통사고조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 10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함(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제5항)	의무/재량 규정
4	안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제3항)	재량규정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제4항)	
5	안 제16조(사무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항)	의무규정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1조(사고조사 개시 및 조사단 구성)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3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운영 및 선박소유자·관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해양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4.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마·자동차운영 및 소유자·관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교통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5.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철도·선박시설·차량·자동차 그 밖의 국가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6. 항공사고 관계인, 철도사고 관계인, 해양사고 관계인, 교통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7. 관계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8.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재량규정
8	안 제24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사,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철도차량·선박·차마·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25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32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위원회는 국내외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국가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33조(사고조사관 등)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사고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사고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제정안 부칙은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¹⁾을 삭제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 항공·철도 사고 및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대상 해양사고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따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경찰청 소관의 대형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안 제2조 및 제4조)

- 제정안에 따라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분야 대형사고에 대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해양심판원 등 기존 조직이 수행하던 사고조사 관련 사무와 인력을 조정한 후 제정안에 따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에서 업무 조정으로 이관되는 기존 조직의 사무와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baseline)를 차감하여 추계할 수 있을 것임

- 2025년 기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현황(참고자료 1)
- 2025년 기준 해양안전심판원 현황(참고자료 2)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소재지, 사업 범위 및 인력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 해양사고

② ~ ⑧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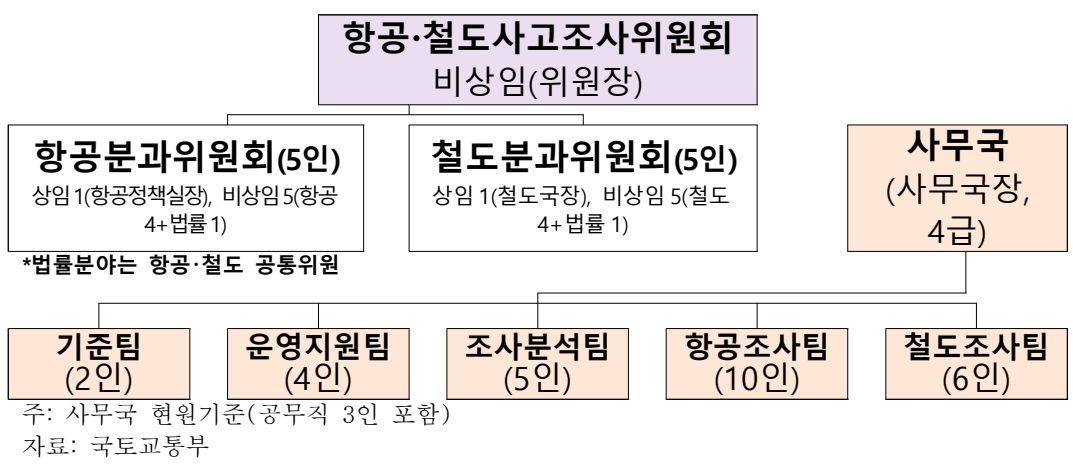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현황

□ (조직·인원) 위원장(비상임), 2개 분과위(항공+철도), 사무국(사무국장, 5팀)



□ (사무국) 정원 29명 / 현원 28명

계	일반직(11/12)			전문임기제(사조조사관)		공무직 3명
	4급	5급	6급 이하	가급	나급	
29/28 (정원/현원)	1/1	5/6	5/5	3/3	12/10	3/3 (영어자문관, 청소원, 시설관리원)

주: 사고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확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경력경쟁공개채용을 거쳐 임용(1년단위 계약, 사조위 사무국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최대 5년)
자료: 국토교통부

□ (25년 예산) 2,033백만원(인건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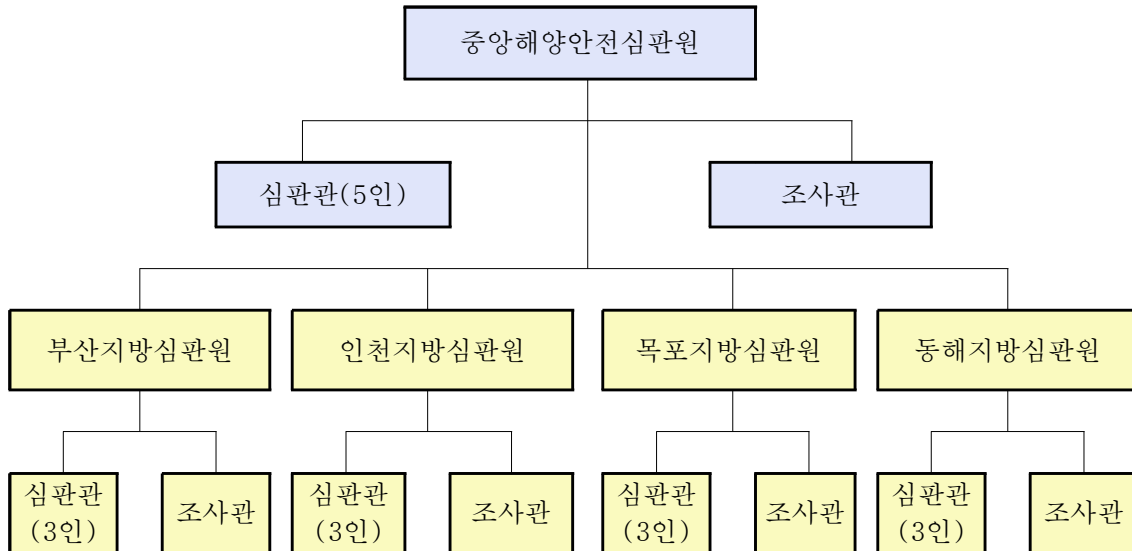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5예산	주요내용
	예산	결산		
합 계	1,402	1,336	2,033	
■ 항공기사고조사 및 장비유지	1,025	986	1,649	*항공 사고조사 및 예방활동 *항공사고조사 장비취득 및 유지보수
■ 철도사고조사	177	151	171	*철도사고조사 및 예방활동 *철도사고조사 장비취득 및 유지보수
■ 사조위 기본경비	13	13	13	*사조위 운영 기본경비
■ 사조위 기본경비 (비충액)	187	186	200	*사조위 운영 기본경비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 해양안전심판원 조직 및 예산 현황

□ 조직 및 정원



구 분	계	고위공무원				4급			5급 이하		
		소계	원장	조사관	심판관	소계	조사관	심판관	소계	5급	6~9급
정 원	76(명)	10	5	1	4	13	5	8	53	11	42

자료: 해양수산부

□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4년 예산	'25년 예산	비고
합 계	8,370	8,474	
■ 해상안전국제협력	139	139	* 특별조사 수행 * 국제협력 등
■ 선박운송안전확보	841	966	* 사고조사 수행, 안전자료 제작 등 * 심판 변론인 수당, 속기사 운영 등
■ 해양심판정보화	255	255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 인건비 및 기본경비	7,135	7,114	* 인건비 63억, 기본경비 8억

자료: 해양수산부